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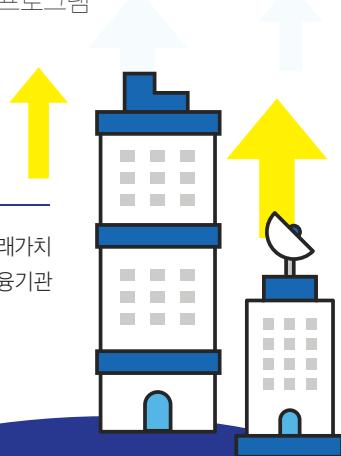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증지원이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보증혜택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 세부 기준

●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공단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 제조기업**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가능기간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 `17.1.1 이후 인증 기업 |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
|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 `18년도 협력 기업 | ~19.12.31.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 `18년도 적합판정기업 | ~19.12.31. |
| 위험성평가 인정 | `17.1.1 이후 인정 기업 | 인정 유지기간 종료 시까지 |
|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 `18.1.1 이후 공모전 선발 기업 | 공모전 수상일로부터 3년 |

예시

- ① `17.3.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3년) 시점인 `20.3.19. 까지 보증신청 가능
- ② `18년도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19.12.31 까지 보증신청 가능
- ③ `18년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적합판정 기업은 `19.12.31 까지 보증신청 가능
- ④ `19.3.10.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유지기간인 `22.3.9.까지 보증신청 가능
만약 위험성평가 인정 사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⑤ `18.6.3. 안전 신기술 공모전 수상기업은 유효기간인 `21.6.2.까지 보증신청 가능

2

사업 진행 절차



보증신청 / 상담

취급자 | 신청기업 영업팀장

보증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
(<http://www.kibo.or.kr>)

상담

영업점 고객센터 ☎ 1544-1120

영업점 방문



서류접수

취급자 |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 제출

▶ 여타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지원이 직접 수집



현장평가

취급자 | 평가담당자

현장평가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등



심사 / 승인

취급자 |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고려 승인 여부 결정



보증서 발급

취급자 |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후 보증서 (전자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소요기간

서류접수 후 현장조사일 (본평기일)로부터 약 4~6일 소요

▶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 보증금액, 이용기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동 사업대상 안전경영활동 우수 제조기업은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

▶ 유의사항

- 기업 신용 및 경영상태가 기술보증기금 지원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음
- 각 사업별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금융기관 여신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 보증지원 제한기업 사례 예시

01 휴업중인기업

02 채무관계자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기업

03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 주력기업이 신용관리정보대상자

04 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있거나 청산 들어간 기업

05 대출금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06 금융부조리 관련기업

07 기금, 신보, 재단 보증사고기업

08 기금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09 기금·신보·재단에서 채권변제 받지못한 기업

10 9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대표(공동경영자 포함),
실제경영자가 대표(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11 9호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12 기보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기업

13 기보 보증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기업

1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

※ 상기항목들은 보증진행불가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지점에서 상담 후 보증지원 여부가 결정됨.